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유발 전기공사업자
행정처분 근거 신설〉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1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

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공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 시공 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재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1항제9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공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전기공사업은 고압 전류를 취급하고 고소(高所) 작업이 수반되는 특성상 감전, 추락, 깔림 등 중대재해¹⁾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분야임.

실제 고용노동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기공사 및 보수 현장에서의 감전, 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전기공사 현장 중대재해 및 감전사고 사상자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기공사 중대재해 (고용부)	-	-	8건 (감전 5, 추락 3)	12건 (감전 5, 추락 5 등)	23건 (감전 10, 추락 11 등)
공사·보수 감전 사망자	2명	5명	6명	2명	11명
공사·보수 감전 부상자	153명	136명	136명	126명	118명

*자료: 고용노동부(중대재해 알림e), 국가통계포털(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종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²⁾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연계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의안번호 2214720)에서는 반복적인 산재 발생 시 '등록취소' 요청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을 수용하여 실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본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복적인 산재 유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적 타당성이 높음.

다만, 개정안 심사 시 타 공사업 법령과의 형평성 및 영세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전기공사업계의 현실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행정처분 근거 신설의 타당성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검토가 필요함.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유사 업종인 일반 건설업의 경우, 이미 「건설산업기본법」³⁾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음.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타 공사업 법령과의 중대재해 제재 근거 비교]

구 분	「전기공사업법」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현행)
관련 조항	규정 없음 (개정안 제28조제1항 신설 추진)	제82조제1항제7호
처분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위 표와 같이 건설업에는 이미 도입된 규제가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업에는 누락되어 있어 산업 안전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개정안은 타 산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부처 간(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행정 제재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본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타 법령에 대한 개정안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패키지 법안⁴⁾으로 연계 발의되어 있음.

둘째, 업계의 파급효과 및 영세 공사업자 보호 등 보완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의 긍정적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4) 본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주영 의원은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하였음(의안번호 2214718~2214723).

관련 업계에서는 현장의 과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현재 등록된 전기공사 업체(약 2만 개사)의 약 75%~85%가 자본력과 안전 관리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함.

업계는 이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⁵⁾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중대재해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등록취소(시장 퇴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세 업체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이중 처벌적 성격을 띠 수 있다고 지적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평소 산재 예방에 힘쓴 모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소기업 대상 안전 관리 지원 확대 등 유화책(완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재 요청 요건(동시 2명 이상 사망 등)의 엄격성을 확인하고, 향후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위임 시 위반의 고의

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성, 과실 정도, 과거 산재 이력 등에 따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